

# 충청북도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
----------	----

발의년월일 : 1996. 2.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 □ 개정사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7호) 및 국내여비규정의 개정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7호)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 □ 주요골자

-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에 원격지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함.
-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숙박비 (20,700원 → 37,500원) 및 식비 (11,000원 → 25,000원)를 상향 조정함.

##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5』
- 국내여비규정 『별표 2』

## □ 기타 참고자료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회의수당지급)중 “회의수당을”을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회의수당지급기준)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도의회 소재지로부터 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 (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 · 숙박비 및 식비(3분의 1)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③제2항의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은 별표3과 같다.

【 별표 1 】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 및 식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구 분	숙 박 비 ( 1 야 당 )	식 비 ( 1 일 당 )
의장 · 부의장	37,500	25,000
의 원	37,500	25,000

【 별표 3 】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

(단위 : km)

시·군별	대 상 지 역
충 주 시	동일원(71.0), 상모면(80.7), 살미면(71.7), 소태면(94.8), 업정면(85.8), 산척면(85.8), 동량면(81.8), 금가면(83.8), 가금면(81.8), 양성면(77.8), 노은면(69.8), 신니면(63.8)
제 천 시	동일원(118.9), 봉양읍(109.2), 백운면(120.9), 송학면(129.0), 청풍면(129.7), 금성면(130.2), 수산면(116.0), 한수면(124.7), 덕산면(109.4)
보 은 군	산외면(64.3), 외속리면(63.2), 내속리면(66.1), 삼승면(66.1), 탄부면(67.2), 마로면(70.1)
옥 천 군	동이면(63.4), 안남면(74.2), 안내면(72.1), 청성면(75.8), 청산면(77.5), 이원면(64.6), 군서면(60.6)
영 동 군	영동읍(83.4), 용산면(87.2), 황간면(100.0), 추풍령면(108.0), 매곡면(104.9), 상촌면(110.7), 양강면(87.4), 용화면(113.4), 학산면(97.7), 양산면(100.9), 심천면(74.0)
괴 산 군	장연면(65.6), 연풍면(70.4), 불정면(62.2)
음 성 군	생극면(60.5), 감곡면(71.6)
단 양 군	단양읍(143.5), 매포읍(155.6), 단성면(154.7), 대강면(155.4), 가곡면(150.7), 영춘면(164.4), 어상천면(164.8), 적성면(168.6)